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3. 6.11(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3. 6. 21(금)
- 다. 상정일자 : 2013. 6. 21(금) 제19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도시주택과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고

- 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제한(12층)에 관하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있고 용적율과 건폐율로 이미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 고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이중규제 및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 명시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를 근거로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을 “가구면적”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각호”를 “각 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영 제54조제2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토지분할제한면적)”을 “(토지분할 허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분할 후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산지분할의 경우 분할선이 능선, 계곡, 입목의 종류 등 지형 및 현황과 일치할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8조 중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를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관련)(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